

미군기지의 환경문제 개선 방향에 관한 고찰*

박기주**

차 례

- I. 서론
- II. 주한미군기지의 환경 피해 실태
- III. 환경문제와 관련한 현실적 문제점
- IV. 주한 미군기지 환경 문제 개선방향
- V. 결 론

[국문초록]

주한미군기지 환경문제가 주민의 인권, 생존권, 환경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라는 이름으로 은폐 또는 무시된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지적은 바람직한 양국관계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심각히 해결하여야할 사항이다.

더구나 최근 한국측에 반환되고 있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군주둔기간동안 발생한 오염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오염유발시설들을 점검관리하지 않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 미군기지 환경피해의 사례들을 조사하여 파악하고, 방치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상 허술한 환경조항을 하루 빨리 개선하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한미 당국자간의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추가 반환될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사고, 소

* 본 논문은 2009년도 조선대학교 교내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군사학부 교수

음과 진동피해 등에 대해 환경정책과 SOFA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미군측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한미군기지의 주요 환경오염실태를 살펴보고 양국간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관련법적용의 문제점 및 이의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해본다.

I. 서론

최근 용산 등 주한미군주둔기지 반환이 진행되면서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와 복원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¹⁾ 환경파괴를 예방하고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된 지역은 신속한 치유와 복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미군과의 환경문제는 오랫동안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동맹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규정상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1966년 한미간에 체결된 SOFA에는 처음부터 아예 환경관련 조항이 없었으며 이는 1991년 1차 SOFA 개정 후 다시 10년 만인 2001년 2차 개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환경관련 조항이 처음 신설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환경조항 조차도 본 협정이 아닌 부속문서인 합의 의사록에 포함되는 수준에 그쳤으며, 한미양측은 이를 근거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어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 등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우리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방식은 주한미군기지를 이른바 ‘환경사각지대’로 만들고 있어 정부의 녹색성장 외침은 힘없는 구호에 그치고 마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1) 2004년 4월 환경부가 작성한 대외비문서인 「환경오염 및 복원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81만평(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중에서 2만 4천여 평만 오염 됐다 하여도 토양오염치유(지하수 오염, 석면, 폐기물 제외)만으로도 931억원의 치유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더구나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복구비용은 정부의 당초 예상액(1천 1987억원: 국방부추정)보다 2배 이상 많은 액수(3천 200억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하여 국가재정운영에도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되고 있다.²⁾

다행히 2009. 3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기지 공여 및 반환기지 환경오염 조사, 치유 협의 등에 관한 '공동 환경 평가절차서(JZAP)'를 합의, 채택하여 기지오염 위해성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검사한 뒤³⁾ 양국간 공동 평가를 거쳐 미국 측 비용으로 오염된 기지를 치유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으나 핵심 쟁점 사항인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 기준, 미국측의 치유 비용 부담 확대, 정보 비공개 조항들에는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능한 외교력만 드러냈다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⁴⁾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현황 및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관련한 한미간 쟁점 사항들에 대한 관련법 적용의 문제점 및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2) 이와는 별도로 폐기물 처리 비용만 70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되며 더 큰 문제는 일본과 필리핀의 경우는 미군이 기지사용비를 해당 국가에 지불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오염 복구비용도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기지도 무상대여 하고 있고, 엄청난 액수의 환경비용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이다.

3) 이 방식의 핵심은 SOFA(주한미군주둔군 지위협정) 규정상 오염 치유 기준인 KISE(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위해성'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위해성 평가는 토양, 지하수를 통해 인간에 미치는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산정한 후 치유가 필요한 위해성을 가졌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밖에 평가절차서는 환경분과위 차원에서 이견 발생시 특별 합동위에서 한번 더 조정하도록 하는 협의 절차 보강과 미측의 치유 이행 과정에 한국측이 참관 또는 필요시 조사 및 분석 토론 하였으며, 현장조사기간도 기지 규모 및 오염 유발 시설수 등을 감안해 기존 50일에서 최대 150일까지 연장 설정했다. (매일경제신문, 2009. 3. 19)

4) 오염 여부 판단에 한국의 위해성 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판단의 참고사항에 머무르는 것이어서 미국이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주장하듯 성과로 보기에 의문스럽고 조사 기간연장과 오염치유 과정에 한국 측이 참관, 또는 필요할 때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이런 합의 역시 2007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문한 '한국 쪽에 불리한 반환기지 환경오염치유 규정의 개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한겨레 신문, 2009. 3. 19)

II.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실태

1. 주한미군기지의 환경 피해 실태

1953년 휴전협정 이후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이후 미군의 지속적인 한국주둔의 법적근거가 되었고,⁵⁾ 1966년에는 주둔군 지위협정인 ‘한·미 SOFA’가 정식 체결되어 우리의 땅은 60여년 가까이 미군에 공여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며 현재 이중 일부 공여 토지는 한국측에 반환되고 있는 실정이다.⁶⁾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우방군 으로서의 그 동안 우리안보에 큰 힘이 되기도 하였으나 반면에 인권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 미군에 의한 환경 피해사항으로는 공군기지 주변 항공기소음, 폭격장 주변 소음과 지하수 오염, 오폐수 방출에 의한 수질오염, 미군기지내 폐기물 처리와 기름유출에 따른 토양 오염 등이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⁷⁾ 그러나 미군주둔기지는 일반인은 물론 한국정부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치외법권 시대 화 되어 기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좀처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또한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전투기 소음 문제도 대표적 환경피해 사항이다. 미군기지의 소음 문제는 매항리 사격장,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소음 소송은 국내 최초 민항기 소음 소송인 김포

5)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전문과 본문 6조 및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은 자국의 육, 해,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한반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 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 할 수 있다.

6) 2009년 10월 현재, 반환대상 미군기지는 80개로 이 중 20개는 반환이 완료됐고 이 중에서 오염기지는 18개이고 비오염기지는 22개로 집계됐다. 미 반환기지 40개 중에는 현재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27개소를 제외하고 13개소가 미군이 철수한 상태로 환경위해성 평가가 진행중인 1개소를 제외하고는 12개소에서 2개소만 비오염 기지로 나타났다. (2009. 10. 국방부 산하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란 자료참조).

7) 용산 기지내 영안실에서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방류한 사건(2000. 7) 이 후 주한미군의 환경문제는 활발하게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건축 폐기물 무단 매립투기는 물론,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 매항리사태 등 많은 사례들이 논란이 되어 왔다.

공항보다 먼저 제기되었다. 이처럼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피해는 크게 기름 및 오폐수 유출로 인한 기지 및 주변 민가지역 오염, 소음피해, 반환기지 환경오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기름 및 오폐수 유출로 인한 오염 피해

(1)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지하수오염은 미군기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다. 기름 유출의 대표적인 원인은 미군기지내 유류저장 시설들이 낙후되어 송유관이 파손되거나 주유시설의 관리소홀로 인한 토양 오염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⁸⁾ 기름이 아닌 수질오염의 경우는 오폐수 방류와 화학물질 무단처리 등이 있다.⁹⁾ 오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의 원인은 미군기지 내부 하수처리 시설이 낙후하거나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와 협조 하수처리장과의 관리 연결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 표 1 > 2004 이후 기름유출 등 오염 사고현황¹⁰⁾

일시	장소	사고내용	처리결과
'04. 2	평택캠프헵프리	헬기연료공급 송유관 파손으로 약 3만 갤런(추정) JP-8 유출 (외곽유출은 미발견)	04. 2. 27~3. 5:방제작업 실시
'04. 3	포천연평사격장	미군사격장 임시주유 탱크 관리 부주위로 인근 소하천에 기름띠 발생	- 임시탱크 제거 및 유류제거 조치 - 복원완료(04. 5)
'04. 8 '09. 6	원주캠프이글 원주캠프퐁	·부대내 파손된 기름 이송라인 복구시 소량유류가 농수로에 유출 ·부대내 기름 유출 섬강으로 유입되는 상류지천으로 흘러듬	- 오일펜스, 흡착포, 토양굴토 하여제거

8)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류 오염된 토양 중에는 중유, 경유, 벙커C유 등에 의한 오염이 확인됐고, 오염원 중 하나인 석유계 탄화수소에는 암유발물질인 '폴리아로 메티사이드로카본' 등의 물질이 다량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2009. 환경관리공단 자료 참조).

9) 미군8군 영안실(u. s Army mortuary)에서 한강에 방류한 포름알데히드 사건은 심각한 사회여론을 촉발시켰으며 SOFA에 환경조항이 신설된 계기가 되었다.

'05. 6	군산미군기지	폐유 저장탱크 밸브고장으로 인한 농경지로 폐유유출	- 방제조치(오일펜스, 흡착포) - 복원후 기지내부 및 외부 89 곳에서 조사 실시(토양 54곳, 지하수 35곳)
'06. 7	용산캠프킵	·부대 담장 옆 전력구에서 유출된 기름 발견	- 해당자치단체조사
'08. 8	파주미2사단 (캠프하우스)	송유관이 파손돼 경우 2천리터가 유출, 인근하천유입	- 방제조치

자료 : 녹색연합 홈페이지(www.greenkorea.org)

(2) 오폐수,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피해

미군기지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 1999년 군산 미군기지지에서 기지내 식당과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제대로 처리 되지 않고 기지 밖으로 방류된 것이 확인되면서¹¹⁾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게 되었으며 이 후 군산시와 미군측은 미군측의 하수처리장 분담금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 하고 2005년 하수관 연결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미군 부대내 관로 공사가 미흡하여 일일처리 용량을 초과하였거나 무단 방류함으로써 여전히 오염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대표적 사례로는 최근 직도 사격장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실태조사결과¹²⁾ 탄두 및 뇌관에 사용되는 중금속과 화학물질인 TNT와 RDX 구리와 납등의 발암 물질성 중금속이 대량 검출되어 논란이 되었으며 2000년 2월 발생한 용산 미군기지내 영안실에서 포르말린 용액을 한강으로 흘러보낸 독극물 유출사건은 당시 사회적 큰 파장을 초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10) 이 외에도 서울녹사평역 기름유출 사건 등(2001) 오염사례가 많으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환경관리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2개 기관이 전국의 반환·미반환 미군기지 52개를 조사한 결과 32개에서 유류오염으로 인해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중금속이 다량검출 되는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09. 10. 국회국방위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국정감사 자료)

11) 당시 미군측의 생활하수는 방류구를 통해 인근 군산 앞 새만금 해역으로 흘러들어 갔으며 시민 단체 들은 하수도의 오염도는 환경 기준치의 6~7배에 이르고 있어 해양오염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 였다. (군산 미군기지 우리 땅 찾기 시민모임 자료 참조)

12) 한·미 공군이 1971년부터 해상실무장폭격훈련을 하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소재 무인섬으로 2007년 에는 첨단장비인 자동 채점 장비(wiss, Weapon Impact Scoring System)가 설치되어 매항리 사격장 폐쇄로 인한 대체사격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항공기 소음 피해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를 둘러싼 주민들의 소송은 전국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군항공기와 대한민국 공군이 사용하는 공동 운용기지와 민·군이 함께 사용하는 비행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¹³⁾ 특히 군용전투기 및 폭격기가 배치되어 있는 미군기지의 소음문제는 매향리 사격장,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소송 소송이 대표적인 사항으로 지금까지도 평택, 군산 등 미군기지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위와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¹⁴⁾

(1) 매향리 사격장 소음 피해사례

매향리 일대 연안해역과 해안지역에 설치된 사격장은 미7공군 소속의 전용 사격장으로 매향리 해안으로부터 1.6km 가량 떨어진 농섬을 중심으로 690만평 해상에 설치된 해상사격장과 이에 접한 매향리 일대 29만평의 지상에 설치된 육상 사격장으로 이루어 졌으며 주한미공군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괌, 하와이 등 거의 전투기들의 훈련도 이루어졌으며 주·야간 사격훈련이 진행되어 소음피해가 심각하였다.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전투기 폭격 소음으로 인해 소음성 난청, 고혈압, 스트레스, 수면장애, 불안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게 되고, TV시청이나 전화통화, 자녀학습, 일상대화에 심각한 방해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축의 생장 발육과 번식에도 영향을 미쳐 낙농업과 양계업의 운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어왔다.¹⁵⁾

소음 소송에서도 2004년 대법원은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여 국가배상판결을 내렸다.¹⁶⁾

13) 이만중, 「군용항공기 소음 피해의 쟁점 및 법적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2009, 255면

14) 2004년 매향리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일부 인정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소음 소송 제기 건수가 줄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공군에 의한 소음피해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청력 손실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주변 학생들의 학습권도 크게 침해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 7, 17, 환경일보 참조)

15) 녹색연합, 「미군기지환경피해보고서」 2008, 91면

16) 주민들이 주말, 공휴일을 매일 평균 70dB 정도의 소음에, 매일 10회 이상 매회 20분 정도씩 평균 90dB 이상의 소음에, 실제 사격훈련이 이루어지는 시간에는 순간적으로 최대 130dB를 전후한 소음에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주한미군은 배상금 부담을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다. 한미소파 제 23조 5항은 미군에 의한 피해의 경우 미군측이 배상금의 75%를, 한국측이 25%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표 2 > 소음소송 당시 소음감정 결과
(단위등가소음 수준인 dB 괄호는 항공소음영향평가도 WECPNL로 계산)

측정지역	1일평균소음	최고1시간평균소음	최고1분간평균소음
매항1리	72.2(85.5)	77.7(90.7)	130.4
매항2리	74.4(87.4)	75.2(88.2)	132.9
매항3리	73.1(86.1)	79.2(92.2)	127.9
매항5리	66.1(79.1)	68.5(81.5)	120.9
석천3리	68.3(81.3)	69.7(82.7)	128.6
이화1리	62.8(75.8)	68.3(81.8)	125.2
이화3리	67.7(80.7)	75.2(88.2)	129.7
평균	70.2(83.2)	73.8(86.8)	전투기 없는 날 평균소음 50dB(A)전후

자료 : 녹색연합, 미군기지환경피해조사위원회자료(2008, 7)참조.

(2) 군산 미공군기지 소음피해

군산 미군기지는 미태평양 공군사령부 예하부대인 미7공군의 제8전투 비행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미7공군 소속의 F-16 전투기들 외에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공군들이 수시로 배치되어 훈련하고 있다. 또한 한국 공군 38전투 비행전대와 민간항공기도 주둔하여 훈련과 운항을 하고 있다.

특히, 매항리 사격장 폐쇄 이후에는 군산기지 인근에 있는 직도라는 무인도에 있는 미군 국제폭격장에 미공군 훈련을 위한 자동 채점 장치가 설치되면서 실무장 폭격이 가능해지면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 수십에서 수백의 횟수를 나타내고¹⁷⁾ 있어, 이로 인한 소음피해로 부대인근주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축집단폐사 등의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¹⁸⁾

17)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인 옥서면 주민들과 우리 땅 찾기 시민모임을 2008, 11,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직도 폭격장 승인 이후 기지주변 소음이 2006, 90.5웨클이던 것이 2007년에는 80.8웨클, 2008년에는 82웨클로 일반기준치인 75웨클 이상이 넘는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음피해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18) 군산 미군기지에서 약 1.5km 떨어진 토끼사육장에서는 순환배치로 인해 훈련양이 많아지면서 2008

< 표 3 > 군산 미군기지 소음측정결과(2007년 11월 1주간)

요일	이륙	착륙	선회	T&G	총	평균dB	최고dB
월	36	34	27	35	132	83.2	106.3
화	68	68	47	29	212	89.8	108.7
수	36		29		65	95.3	108.2
목	62		27	5	94	92.8	109.8
금	32		15		47	94.7	107.1

자료: 군산 미군기지피해상당소 자료 참조.

(3) 평택 지역 소음 피해

평택지역에는 미군기지가 두 군데 주둔하고 있다. 먼저 오산 공군기지(Osan Air Base)는 태평양 사령부 7공군 산하 51전투 비행단이 주둔해 있는 기지로 F15, F16, A10, C130의 군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기지이다.

다른 한 곳은 캠프험프리(Camp Humphreys)기지로 CH47D 치누크수송헬기, UH60블랙호크, AH-64아파치헬기 등이 있다. 즉 한곳은 주로 전투기에 의한 소음이고 다른 곳은 헬기에 의한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 공통으로 소음 소송을 진행하여¹⁹⁾ 2007년 12월 1심 판결이 났으며, 결과는 총 677명의 소송인 중 272명만이 피해가 인정되어 이에 항소하여 2009년 2월 소송을 낸 평택 주민 모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²⁰⁾

년 한해동안 5차례에 걸쳐 토끼 4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당소 자료 참조.)
 19) 오산기지 경우 2008, 9월부터 기지주변 마을 10곳에 설치된 소음 진동자동측정기의 측정결과 300여 명이 사는 회화리의 경우 최고 90.2웨클(WECPNL)까지 기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법상 95웨클 이상 지역을 이주대상으로 분류된다. 최근주민들이 집단소송으로 배상 판결을 받은 광주공항의 소음도는 86웨클이다. (한겨레 사회면, 2009. 09. 29자).

20) 서울 고등 법원은 오산 비행장과 캠프험프리스 주변 주민 67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모두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통상 사회생활상 참을 수 있는 소음 한도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85웨클보다 낮은 80웨클로 봐야한다며 소송 제3주민 677명 전원에게 소음도에 따라 월 3만원에서 4만 5000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 표 4 > 소음 조사 결과

측정지점		연간 일일 평균 소음도		운항비율(%)		
		dB	WECPNL	이륙	착륙	선회
오산 공군 기지 주변 (전투기)	구장터	104.9	97.8	12.0	56.0	22.0
	회화리	96.9	89.9	50.7	12.8	30.2
	금각리	82.7	75.7	56.5	3.0	34.8
	장등리	83.9	75.9	45.8	3.4	39.2
	서정동	85.4	75.8	39.3	5.5	42.3
	신장1동	96.5	91.6	20.6	36.8	35.2
캠프 험프리 주변 (헬기)	대추리	74.7	67.7	23.9	4.1	51.9
	안정4리	70.1	63.0	20.1	38.3	27.3
	함정1리	69.1	59.1	0	0	91.8
	송화1리	79.2	79.2	2.2	41.5	38.7
	동창리	73.1	73.1	1.1	6.7	73.3
	송화2리	88.3	88.3	5.6	57.0	13.3

자료: 평택시(2002년 12. 10 ~ 2003년 12. 9까지 3회 조사결과임).

4.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는 지금까지 미군들이 기지를 사용하던 당시의 오염 사고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오염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오염 사고의 대부분은 노후된 유류저장고와 송유관 관리소홀로 인한 기름유출이었다.²¹⁾

특히 환경부가 조사한 반환예정 미군기지 중 29개소(2006. 6까지 조사완료)에 대한 오염실태는 우려기준보다 높은 오염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이들 지역(132만평)에 대한 환경오염치유를 위해서는 약 1205억원이 들 것으로 환경부는 발표하고 있으나 환경단체들의 경우는 천문학적인 정화비용이 투입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²⁾

21) 이만중,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2008, 141면.

22) 캠프페이지(강원도 춘천)와 캠프 게리오웬(경기도 파주)의 경우 기름에 의한 토양 오염을 나타내는 TPL(총석유계 탄화수소)가 각각 5만522mg/kg, 4만7819mg/kg로 나타났다. 이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500mg/kg를 각각 500mg/kg를 100배, 95배를 초과한 것이다. 벤젠, 톨루엔 등의 유기화학물 오염정도를

< 표 5 > 반환 예정 미군기지 오염실태

구분	오염물질	발견된곳	가장심각한곳 및 그 수치	비고
토양오염	TPL	25	캠프페이지(50.552mg/kg)	기준치의 101배
	BTEX	7	캠프그레이(1.699mg/kg)	검출돼서는 안되는 항목임
	납	5	파주사격장(15.200mg)	기준치의 152배
지하수 오염	TPH	12	캠프에세이온(1.298mg/l)	기준치의 865배
	페놀	5	캠프에드워드(0.523mg/l)	기준치의 104배

자료: 환경부 국회보고자료, 2006. 7. 24

III. 환경문제와 관련한 현실적 문제점

1. 불평등한 한미간 행정협정(SOFA)

한미행정협정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²³⁾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나타내는 BTEX(휘발성 방향족 탄화수소)오염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암물질로 고농도 흡입 시 사망을 초래하는 벤젠을 포함하는 BTEX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오염 항목이지만, 기지 7곳에서 BTEX가 발견됐다. 중금속 오염 역시 심각하다. 납 오염은 5곳의 기지에서 발견됐는데, 이중 가장 심각한 곳은 파주 사격장. 우리기준(100mg/kg)의 150배를 상회하는 1만5200mg/kg의 납이 검출됐다. 납뿐만 아니라 구리(2곳), 아연(8곳), 니켈(3곳), 카드뮴(3곳), 비소(1곳)에 의한 토양 오염도 발견됐다. 지하수 오염 역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의정부에 소재한 캠프 카일의 지하수에서 4.88m 높이의 기름띠가 발견돼 충격을 주었다. 조사가 완료된 29곳 중 지하수 TPL가 우리기준보다 높은 기지는 11곳으로, 캠프 에세이온(의정부)의 TPL은 1298mg/l로 나타났다. 이는 정화기준 1.5mg/l의 865배에 이르는 수치. 기름의 의한 토양오염이 가장 심각한 캠프 페이지 역시 지하수 TPH가 정화기준의 472배 초과한 708.9mg/l였다. 페놀, 벤젠, 크실렌, PCE 오염은 각각 5곳, 5곳, 3곳, 1곳에서 발견됐다.

23) 1966년 한미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으로 SOFA는 약칭이다. 이에 반해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약이며, 한미행정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하게 된 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행정협정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야만 한다. 즉 주둔국가에서의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맺어진 것이 바로 SOFA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간 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여론으로,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사회에서 빈번한 화두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양국간 형평성 문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²⁴⁾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 문제와 환경관련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이중 환경관련 조항은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상의 독소조항과 한미당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여전히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허술한 SOFA 환경조항을 하루 빨리 개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²⁵⁾

(1) 국내 환경법 적용 여부 미 명시

SOFA 환경조항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환경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본문이 아닌 SOFA 합의 의사록 제 3조 2항은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협정 제 2조와 3조, 4조 등에서 시설과 구역의 사용 및 반환에 관해 언급해 놓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이 조항에 나와 있는 '존중한다' '확인한다'는 표현은 한국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미군당국의 법적의무가 결여되어 있는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⁶⁾ 그러다보니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나 통제는 물론, 그 실태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²⁷⁾

24) 한미행정협정은 1990년대 초 잇따른 미군범죄와, 경제성장을 토대로 한국민의 인식전환에 힘입어 1991년 1차 개정된 바 있다.

25) 1966년 한미간 체결된 SOFA에는 환경관련조항이 처음부터 없었다. 그러나 2001년 2차 개정을 하면서 처음으로 환경관련조항이 신설 되었지만 이 환경조항은 본 협정이 아닌 부속문서인 합의 의사록에 포함되는 수준에 그쳤으며, 한미 양측은 이를 근거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어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 A'들을 채택하였다.

26) '독일관 SOFA'인 독일보충협정은 파견국 군대(미군)의 독일환경 법규준수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의 입장과는 비교되고 있다.

27) 다만 제 3조에서 '시설과 구역 안에서 시설과 구역에 필요한 경우 한미간에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를 합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뿐이다. 이같은 규

(2) 환경오염 원상회복과 이용부담 의무 미 명시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범죄행위자 처벌과 원상복구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는 한 환경조항을 규정한 합의의사록과 양해각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나 SOFA에는 이를 강제할 근거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본 협정 제 4조 1항을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이들 시설과 구역이 미군에 제공된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대신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대표적인 부당조항으로 꼽힌다.

즉 국제환경법상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른 복구비용부담의무가 명시 되지 않은 것이다.²⁸⁾

이와 함께 기지반환 이후 발견된 환경오염치유와 복원 책임 소재에 대한 규정도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미군기지내에 대한 환경 조사상 한계

SOFA의 허술한 규정 때문에 미군기지내에서 발생한 오염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원인조사와 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것 또한 문제이다.

즉 미군기지내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2003년 5월 한·미 양국이

정에 따라 합동위원회는 현재 1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고, 환경분과위원회는 그 중 하나이다. 따라서 현재의 조약상으로는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측 위원과 미국측 위원이 협의의 통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유일한 해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협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협의’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군이 필요 없게 된 기지라 하더라도 미군이 수락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기지를 빌려준 경우에도 기지가 원래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감시, 통제할 필요가 있고, 일정한 시안에 관해서는 한국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협정 3조 1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군기지에 관해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28) 이와 달리 2002, 5월 한미간에 체결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부속서A’ 한국측에 2002년 1월 18일 이후 반환되는 기지 내 오염조사와 치유에 필요한 비용을 미군측이 전액 부담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향후 반환되는 기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반환 대상이 아닌 기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 또 ‘환경보호에 관한 양해 각서’는 환경오염사고치유에 대해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은 치유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

체결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부속서’에 근거하여 오염현장에 대한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 환경분과 위원장의 상호합의가 있는 다음 조사 요청을 받은 쪽의 환경분과 위원장이 공동조사범위와 목적·참석자 명단이 적힌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를 밟아 공동조사가 실제 이뤄지기까지는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²⁹⁾

또한 이 규정에 언급된 언론보도 관련 조항 역시 ‘언론이나 대중에 정보나 문서를 공개하려면 사전에 환경분과 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언론취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민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다.

3. 환경치유기준에 대한 편협한 해석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2001년 한미양국이 채택한 환경 양해 각서에 규정된 ‘KISE’로 불리는 환경치유기준이다. 이것은 “미국은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now,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는 정책을 확인 한다”는 규정으로 미군측은 이 규정을 들어 주한미군기지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하여 치유할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⁰⁾

그러나 과연 한미공동조사를 통해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와 협상과정이 검증되지 않아 주장의 타당성 여부도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 정부 각 부처도 서로를 설득하기보다는 각자의 주장만을 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29) 이 조항은 ‘사고의 보고 책임이 있는 지방수준의 기관은 주한미군과 한국정부를 막론하고 가능한 빨리 사고를 지방수준의 연락망을 통해 유선 연락하고 동시에 계통을 밟아 이를 책임 있는 중앙수준의 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후 48시간 이내에 서면통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호통보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사후 책임이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다.

30) ‘KISE’는 미국환경법인 CERCLA(종합환경대응배상책임법), RCRA(자원 보존과 복구법)와 오염정화에 관한 국방부 지침(4714. 8), 한미 SOFA 등에서 볼 수 있다.

4. 한·미동맹 분위기를 고려한 정치적 의지 결여

미군기지내에 대한 환경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수세적 입장은 미군지역에 대한 환경감시 및 원상회복 등을 어렵게 하고 있어 환경오염치유비용을 결국은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기대한 내용을 합의하지 못한 채 “무능한 외교력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SOFA를 통해 미국의 정화 책임을 합의한 것. 오염자가 정화해야한다는 오염자 부담원칙 실현 등을 주장한 것처럼 환경문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한국의 환경권을 지키는데 중요한 문제이다.

IV. 주한 미군기지 환경문제 개선 방안

1. 사전적 예방에 의한 대처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간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사전협의 및 사전통보요청권, 오염실태조사와 관련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접근보장 의무, 환경오염 피해조사요청허가의무, 환경오염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권, 환경오염규제 및 방지요청권을 한미행정협정(SOFA)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오염발생시 통보의무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18일 한미 양국이 주한 미군의 환경오염사고를 막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조사 등을 위해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를 채택하여 공동조사 실시에 대한 합의는 했으나 양측사이에 조사방법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율하고 결정하는 절차가 없으며 마련된 규정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조항으로 미군당국에 대하여 한국의 환경을 오염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규정을 두어 제반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건이 발생 시 해결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선조사후복원’이라는 한국측 제안에 대해 미군측이 거부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관련규정과 오염복원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정화에 가까운 방식을 의무화 하는 등의 세부지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규정이 있음으

로 해서 미군당국의 자발적인 환경정화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분쟁해결에 있어서 근거규정으로 활용하여 사안의 처리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³¹⁾

2. 사후적 구제에 의한 대처

미군당국의 관리 소홀 및 고의적인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미군측은 오히려 한국측에 책임을 미루고 있어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오게 한다. 이는 미군기지내에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미군당국에 오염제거와 환경원상복구를 강제할 근거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규율할 SOFA 환경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1)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조항 신설

국제법상 국가 간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는 피해를 유발한 국가에 대하여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오염행위의 중지 및 방지를 요구하거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결이 곤란할 경우에는 중재, 조정, 국제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비용과 손해 배상금의 부담을 '오염과 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³²⁾에 따라 오염을 유발한 미군측이 부담하도록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미군의 배상 의무 조항의 구체적 명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청구권에 있어서는, 한미행정협정(SOFA) 제 23조에 청구권(Claims) 조항을 두어 이를 제한하고 있다. 즉 손해가 타방 당사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의하여 공무 중에 일어난 경우 또는 손해가 타방 당사국이 소유하고, 동국의

31) 이재욱, "미군기지의 환경문제", 「공군법률논집」, 제5집, 2001

32) 1972년 OECD 이 사회가 가맹국에 권고한 원칙으로, 환경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배분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제 무역이나 투자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염 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고 방식이다. 요즘에는 오염방지비용 뿐만 아니라 환경의 복원, 피해자의 구제, 오염회피 이용까지도 오염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군대가 사용하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으로부터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을 때, 또는 손해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일어났을 때에 한하여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미측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행위를 공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공무’의 개념 해석에 있어서 미군측은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보다 정확한 개념규정 등 배상의무조항의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

3. 환경법규 적용범위 조항 보완

미군측이 “한국의 주둔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해 근거 규정인 KISE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치유작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의 환경법인 CERCLAC (종합 환경 대응 배상책임법)는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긴급한 상황으로만 한정 짓지 않으며, 위험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현상이 드러나는 경우만이 아니라 ‘위협적인 잠재적 위험’까지 포함한다. 즉 만약 뚜렷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은 급박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미국 환경청의 지침서는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어떤 위험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³³⁾ 따라서 한미간의 환경법규적용 기준에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의 환경법 적용이 미군당국의 법적의무가 결여된 채 ‘존중한다’, ‘확인한다’는 선언적인 내용은 독일의 경우와 같이(독일보충협정) 파견국 군대(미군)의 해당국 환경법규의 준수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4. 정부당국의 정책적 의지 고양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변화되는 한미관계의 요구에 따라 그동

33) 여기서 말하는 ‘위험(endanger)’은 실제 해(harm)보다 낮은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상해가 발생할 필요가 없다. CERCLA는 미국내 군사기지의 환경정화에도 적용된다. (내일신문 2006. 07. 10) 따라서 한미간의 환경 법규적용 기준에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안 확고한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해오면서 한미간의 연합방위체제라는 명문화에³⁴⁾ 그동안 양보되었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문제는 이제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상의 문제와 함께 더 이상 간과하기 힘든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환경문제를 국방부와 외교부가 국가안보의 문제로만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즉 협상의 대상이 될수 없는 문제가 지난날 SOFA를 개정할 때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현재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따라서 최근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회복 및 피해보상 등에 대한 환경개선에 한미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결단이 요구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환경정화와 정화된 기지반환을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V. 결 론

주한미군기지의 환경문제는 국민의 인권, 생존권, 환경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그동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라는 이름으로 은폐 또는 무시되는 현실적인 형편이 큰 문제이었다.

더구나 미군기지에 대한 정보의 미공개는 미군기지지역 환경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 기술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사항이었다.

그러나 미군주둔지역에서 소음과 오염 등 환경피해들이 계속 발생되어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이를 계기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문제가 파악되기 시작하였는바 2000년 매향리 오폐수사고, 한강독극물방류사건, 2001년 원주 캠프롱 기름 유출 사건 등은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일부 시민단체들이 미군기지 지역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2004년 한미 양국 정부간 체결된 용산기지 이전 협정과 연합 토지관리 계획협정 개정에 따라 미군에 공여된 지역이 최근 한국측에 반환되는 과정에

34)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조약이며, 한미행정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하게 된 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미행정협정의 모법이다. 이외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있는데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친 것이라 하여 "한미행정협정"과 함께 사용하는 용어이다.

서 나타난 반환 미군기지 오염실태는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및 그에 대한 구제는 한미간 관련 법규의 해석 차이와 불평등한 입장차이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즉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한미행정협정(SOFA)상의 청구권 규정으로 제한이 되고 있으며 사전조사, 협조, 규제 역시 한미행정협정상의 관리권규정과 관련하여 제한되고 있다. 아울러 미군측의 치유책임에 대한 자의적이고 편협한 해석과 처신도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정부는 'SOFA와 관련협의서'의 어느 곳에서도 미국에 대하여 한국법적용을 면제해주거나 미군의 환경정화책임을 면제해준 바 없다. 단지 미군이 점유하고 배타적인 관리권을 행사하는 동안 현실적으로 한국법을 적용할 수 없었을 뿐이다.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원인자에게 무거운 정화책임을 묻는 것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선진각국의 보편적인 환경법의 내용이 되고 있다.³⁵⁾

따라서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상 허술한 환경조항을 하루 빨리 개선하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한미당국자 간의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는 한미간의 상호 평등한 동맹관계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논문발표일 : 2009. 10. 17 심사일 : 2009. 11. 15 게재확정일 : 2009. 11.23

35) 미국 본토 내에서도 미국 국방부는 1980년대 제정된 '슈퍼펀드법'에 따라 과거에 야기된 군사시설의 환경오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화하고 있다. 슈퍼펀드법(Superfund Act)이란 토양오염원인자등이 불투명할 경우나 오염책임자가 정화비용을 지불 할 수 없을 경우에 이를 직접 정화처리 하는 제도 및 기금을 마련하는 법으로 미국의 경우 약 20조원의 정화기금이 조성돼 미전역의 오염토양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즉 연방정부 스스로가 거액의 자금(슈퍼펀드) 을 보유하고 이 기금을 사용하여 오염시설을 정화하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이 기금은 석유세, 화학품세, 환경법인 소득세, 일반재원 등에 의해서 조달되고 있으며, 미국사상 드물게 보는 오염 사고로 알려진 「러브캐널사건」 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80년에 제정된 법률이며, 우리나라 역시 택지개발사업, 이정 미군기지등과 관련해 토양 등 환경오염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사례가 비밀비재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슈퍼펀드의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 공군본부 인트라넷, 소음대책정보.
- 공군본부, 「각국의 항공기 소음대책 관련법」, 1995.
- 국방부, 「국방개혁('03년 실적 및'04년 추진계획)」, 2004.
- 국립환경연구원, 「수원비행장 군용항공기 소음 영향 지역현황과 수음도 분석」, 2006.
- 국방부 환경보전과 자료실, 2008.
- 김명용 외, 「군사시설 주변지역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정방안 -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 김홍균, “미국 종합환경대응책임법(CERCLA)상의 책임당사자와 토양환경보전법 상의 오염원인자”, 「환경법연구」 제24권 1호, 한국환경법학회.
- 남화선, “군부대가 무서운 민통선사람들”, 「함께 사는 길」, 2002. 1.
- 성낙진, “쓰레기로 오염되고 있는 분단의 현장”, 「환경운동」, 1994. 2.
- 이만중,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관한 법적고찰”, 「환경법연구」 제31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9.
- 이상규, “소음공해에 대한법적 대응”, 「환경강연집」 제2집, 대한변호사협회, 1993.
- 이경춘, “소음과 환경소송/재판자료 95집 환경법의 제 문제(하)”, 법원도서관, 2002
- 여영학, “주한미군의 환경과피와 SOFA”, 「함께 사는 길」, 2000. 7.
- 이재욱, “미군기지의 환경문제”, 「공군법률논집」 제5집, 2001.
- 오두희, “아직 끝나지 않은 SOFA개정 운동”,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주한미군 문제 해결운동사」, 깊은 자유, 2001.
- 채영근,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적용상의 어려움 - CERCLA상의 정화책임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23권 2호, 2001.
- 최승한, “주한미군기지와 환경오염 : 미국 정부의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법적 구제”,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미국범죄」, 개마서원, 1999.

- 홍성태, “군사공간의 생태적 재생과 문화정치-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공간과 사회」 제14호, 2000.
- 한국국방연구원, 「군용항공기 소음대책 연구」, 2000.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군용항공기 소음 기준(안)설정에 관한 연구」, 2002.
- 한국공항공단, 「항공기 소음대책 현황」, 1998.
- 한국 소음진동학회, 「항공기 소음대책 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공항공단, 1999.
- 한국국방연구원, 「군비행장 소음문제와 대책」, 제6회 군 환경보전 학술대회, 2004.
- 황숙희, “한반도의 미군기지”, 「함께 사는 길」 2001. 9.
- ACI. “ACI Policy Handbook, Third Edition”, ACI World Headquarters, 2000.
- Integrated Noise Model User`s Guide, 1996, FAA
- Jonathan Harr, A Civil Action, Random House, 1995.
- Jan Schlichtmann, “Law and Environment : Reflections on Woburn”, 24 Seton Hall Legis. J. 265. 2000.
- Kevin E. Mohr, Legal Ethics and A Civil Action, 23 Seattle U. L. Rev. 283. 1999.
- Kakonen/Jyrki, Green Security dr Militarized Environment, Dartmouth, 1994.
- Linda Silvermann/Allan Stein, Civil Procedure : Theory and Practice, A네두, 2001
- Lee S.Krindlr, “Aviation Accident Law volume 1”, Now York, Matihew Bender & Co, Inc, 1997.
- Romm/Joseph, Defining National Security-the Nonmilitary Aspects,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c. 1993.
- Sandra A. Smith, Polyfuration and the right to a civil jury trial: Litle Grace in the Woburn Case, 25. B. C, Envntl. Aff. L. Rev. 649. 1998.
- <http://www.GreenKorea.org/>
- <http://www.me.go.kr/>

[Abstract]

Study on U. S.bases in Korea in the directio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Park, Gi Joo

Military bases that the people of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Korea`s human rights, survival not be resolved in a way that protects the meantime the military alliance for the sake of a stable presence has been concealed or ignored.

Moreover, the undis closed information about the U. S.bases in the U. S.bases to conduct environmental investigations are costly and time, technologies need to raise the issue because doing a U. S.military base environmental information that was not easy.

But the U. S.continues to occur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damage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let`s military bases in south korea began to be understanding about environmental issues.

Some civic groups held their military bases to investigate the logal environmenr and began to raise questions.

However, the impact of environmental laws and remedies that inter pretation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unequal position differences can not draw back effect.

Thus, U. S.bases in south korea for the fundamental solution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regulations sofa to be amended quickly and aggressively between Rok officials and reasonable efforts are needed.

The us-Rok alliance and further development of cross -versus discriminatory indeed is a good chance that`ll ever be.

주 제 어 미군기지, 환경오염, 환경문제, 피해보상

Key Words U. S.Base, Environmental pollution, Environmental Issues, Damages